

장비 대여 계약서

이 계약서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산 24번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하 "삼성"이라 칭함)와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번지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아이피에스 주식회사(이하 "아이피에스"라 칭함)는 2007년 4월부터 장비대여 계약서를 체결한다.

이 계약서에 따라서, 양사는(삼성과 아이피에스) 삼성에 공급한 아이피에스의 Techo 300M Ti/TiN CVD 장비에 대하여 "대여 계약서"에 합의한다.

그러므로, 이 계약서는 아래의 내용에 동의한다.

제 1조 : 장비 대여

- 1. 아이피에스는 아래의 장비(이하 "장비"이라 칭함)을 삼성에 대여 한다.
 TECHO 300M (serial number of IPS: TN0612-009, 이하 "장치"라 칭함)과 연결된 4 Process Module(2Ti/2TiN)을 갖춘 Ti/TiN CVD 중착 장비
- 2. 공급자(아이피에스)는 부분적인 장치의 승인 임대를 포함 한다.

제 2조 : 사용 목적

삼성은 장비의 사용은 Ti/TiN 공정 평가의 목적으로 대여 기간 동안에 사용한다.

제 3조 : 사용 장소

이 장비는 삼성 Site 안에서 사용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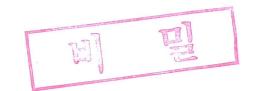
제 4조 : 대여 기간

이 대여 기간은 2007년 4월 6일부터, 2007년 10월 05일까지 이며, Metal Ti/TiN 공정 평가용으로 사용하며, 양사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기간 연장이 완료 후 장비의 처리는 삼성과 아이피에스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5조 : 대여 비용

장비의 대여 비용은 대여기간 동안에는 무료이다.





제 6조 : 장비의 소유권

- 1. 대여 기간 동안에는 장비의 소유권은 아이피에스에 있다.
- 2. 아이피에스는 대여기간 동안에, 장비는 아이피에스의 소유권임을 장비에 보여 지도록 명시한다.

제 7조 : 비용 관계

- 1. 삼성은 아래의 비용 부담한다.
 - (1) Utility-Tool 연결 비용.
 - (2) 장비에 사용에 필요한 물, 전기 같은 종류의 Utility, & 기타
 - (3) 장비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소모품, 예를 들어, 물, Wafer, 기타
 - (4) 외장의 세척 비용
 - (5) Pump, Scrubber등의 장비에 필요한 부대 설비 기타
- 2. 아이피에스는 아래의 비용을 부담한다.
 - (1) 장비의 납품과 설치 비용
- 3. 자세한 사항에 따라서, 장비의 부분적인 것은 별도의 상담을 가진다.

제 8조 : 선행조건 사용.

- 1. 삼성은 "제 2조"에 정의 되어 진 사용 목적을 위해서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삼성이 계약된 목적보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장비 사용을 원한다면 삼성은 아이피에스와 먼저 상담을 통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삼성은 장비의 매뉴얼에 따라서 장비를 작동해야 해야 하고, 삼성담당자는 단지 장비의 작동에 지시만 받는 임무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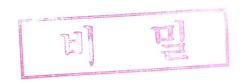
제 9조 : 관리 책임

1. 장비 안전관리를 포함한 장비의 모든 관리 책임은 삼성에 의해서 진다.

만약 대여 기간에 삼성에 의해서든, 삼성에 의해 장비의 오작동이 일어난다면, 삼성이 문제의 수리를 위한 필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장비 자체에 대한 불량 으로 원인되는 비용은 아이피에스에 의해서 지불되어 진다.

제 10조 : 재 개조

1. 삼성에서 재 개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이피에스의 동의를 얻어서 아이피에스 와 함께 먼저 상담을 갖고, 아이피에스에 재 개조의 작업에 대해서 요청해야 한다.



2. 재 개조 작업의 필요 비용은 삼성이 지불한다. 그러나 장비가 양회사의 사양 (SPEC)에 만족하지 않아서 재 개조 필요한 경우에 대한 비용은 아이피에스에서 지불한다.

제 11조 이설

- 1. 삼성이 장착된 장비의 위치에서 이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이피에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아이피에스와 함께 먼저 상의 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피에스에 이설 업무를 요청해야 한다.
- 2. 이설 업무를 위한 필요 비용은 삼성에서 지불된다.

제 12조. 자료 평가

삼성은 장비 사용 동안에 얻어진 평가 자료(DATA)는 아이피에스에 제공해야 한다.

제 13조. 보안

삼성 뿐만 아니라 아이피에스는 어느 쪽에서 발표되어진 어떠한 기술정보, 사업정보를 제 삼자에게 노출/누설 시킬 수 없다.

- (1) 정보 보유 쪽 업체의 소유권에서 노출 될 때 ; 또는
- (2) 공동소유에서 노출의 항목은 : 또는
- (3) 정보 소유 쪽의 실수가 아닌 공동 소유 부분에서 노출이 되는 것 ; 또는
- (4) 제 삼자가 노출 권리를 가진 것에서 부터 결과적으로 별률적 기득권; 또는
- (5) 소유 쪽에서 발표된 정보는 먼저 발표된 업체로부터 먼저 문서에 승인 동의를 얻는다.

제 14.조 특허

삼성과 아이피에스는 발명품, 장치 고안, 기술적인 효과를 위해서 설계 개발이 어느한쪽에서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한쪽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상의 해서 발견된 쪽에서 이것의 산업적인 소유권, 개발권, 발명품이 얻어 질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제 15조. 회사합병을 위한 위임권

아이피에스와 사업 합병된 회사의 경우에는 이 계약서에 근간을 두며, 아이피에스는 합병된 회사에게 이 계약서 대로 의무를 갖도록 업체를 관리 감독한다. 그리고 계속 적인 책임이 유지되도록 관찰한다.



제 16조 유효기간

이 계약서는 앞장에 서명된 날짜로부터 유효하게 되고, 대여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에 효력은 끝나게 된다. 그러나 제 13조의 조항은 계약종료 후에 2년 동안 더 효력을 갖게 된다.

제 17조. 심의회의

이 계약서의 조항에 대한 질문, 또는 포함되지 않은 안건은 대한 것은 삼성과 아이피에 스가 원하는 때에 심의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Syon

삼성전자 대표자

76 对于

SAMSUNG ELECTRONICS CO.,LTD.

아이피에스 대표자

경기도 명택시 지제동 33 (株)아이피에스 依表理事文常榮